

하남시고시 제2020-71호

하남 도시관리계획(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하남 도시관리계획(하남지역현안사업1지구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을 변경(결정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. 관련 도서는 열람장소(하남시청 도시계획과 ☎031-790-6372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,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(<http://luris.molit.go.kr>)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.

2020. 6. 25.
하 남 시 장

□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변경(결정) 조서

- 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나. 용도지역·지구·구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다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라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
 마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획내용
- 단독1	용도	허용 용도	· 단독주택(다중주택, 공관 제외, 지하층 불허)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) · 제1종근린생활시설(가, 나, 다목만 허용) (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) ※ 근린생활시설은 지상1층에 한하여 허용
		불허 용도	·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· 「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의거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시설
	건폐율		· 60% 이하
	용적률		· 200% 이하
	층 수		· 4층 이하(높이 17.5m 이하)
	허용가구수		· 6가구 이하
	배 치		· 건축물의 주 방향은 채광·통풍을 고려하여 배치하되, 가급적 도로변으로 주 방향이 되도록 권장한다.
	형 태		· 동일한 가구내 건축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입면디자인과 재질 사용하되, 박스형태의 단조로운 입면은 지양하고 적절한 매스 분절로 입체감 있는 디자인 사용 권장 · 둘 이상의 재질을 혼용할 경우 이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디자인 · 지붕형태는 경사지붕하고,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되, 높이는 1.2m 이하로 권장 (단, 점포주택은 담장설치 불허하고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의 승인을 득한 경우 설치 가능) · 점포주택 1층 전면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하되, 해당 승인권자(또는 허가권자)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 ·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, 하남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등을 따름

도면 번호	위 치 (가구번호)	구 분	계획내용
-	단독1	색 채	· 건축물 색채에 관한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경관계획 내용을 따름
		건축선	· 대지내 거주환경보호와 가로경관향상, 주변지역의 일조영향 최소화 등을 위하여 건축한계선을 지정하며, 건축한계선을 초과하여 건축물을 돌출 또는 배치할 수 없음. · 건축한계선 : 도로변 1m

바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(결정)조서 : 변경없음